

선정평가 가점 적용 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1. 가점의 적용은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중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또는 과제)의 가점항목으로 공지된 사항만 인정되며, 종합평가점수의 최대 10%까지 중복가산이 인정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한 가점 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목	가점 내용	가점	증빙서류 또는 확인방법
가	생애 첫 R&D - 생애 처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연구책임자로 응모한 과제	3%	NTIS 확인
나	과제이어달리기 - 국립산림과학원 또는 국립수목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차단계 과제	3%	연구개발계획서
다	시장도전형 융합연구 - 해당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료 1년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으로서 해당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차단계 (시)제품개발, 공정적용 또는 사업화 과제	3%	연구개발계획서
라	창업 성장지원 - 창업 3-7년차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응모한 과제	3%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마	사회적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응모한 과제(다만,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에 한하여 일부 가점 인정)	3% (2%)	사회적기업 인증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관련 증빙서류
사	최근 3년 이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2%	신기술 인증서 신제품 인증서
아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2%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자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2%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2%	벤처기업 인증서
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2%	관련 인증서
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2%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3. 주관·협동·공동연구기관(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기업(대표)에 대한 가점 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가목과 나목을 제외한 같은 목의 가점 항목에 다수가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	가점 내용	가점	증빙서류 또는 확인방법
가	<p>청년과학자 일자리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전담(참여율 100%) 연구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대학·국공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 협약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계획된 채용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점을 재산정하며, 이로 인해 탈락한 다음 순위의 과제와 동률 또는 점수가 역전된 경우 해당과제의 협약을 해약하고 별도의 평가 없이 다음 순위의 과제를 선정한다. ** 채용대상자가 해당과제 참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일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 채용대상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일 경우 가점 기준에 0.1%인을 가산 적용한다. 	1%인	연구개발계획서 채용확인서
나	<p>중소기업 연구개발 전문 일자리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전담(참여율 100%) 석·박사 연구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영리기관 * 협약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계획된 채용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점을 재산정하며, 이로 인해 탈락한 다음 순위의 과제와 동률 또는 점수가 역전된 경우 해당과제의 협약을 해약하고 별도의 평가 없이 다음 순위의 과제를 선정한다. ** 채용대상자가 해당기관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일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 채용대상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일 경우 가점 기준에 0.1%인을 가산 적용한다. 	2%인	연구개발계획서 채용확인서
다	<p>여성과학자 연구개발 참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총괄과제 전체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의 참여율 50%이상이 여성인 과제 *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제외하고 적용한다. 	2%	연구개발계획서
라	<p>임업인 연구개발 직접 참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또는 같은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같은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독립가를 참여연구원으로 포함하는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 해당 법규에서 정하는 최소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마	<p>중소기업 협업 연구생태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참여기관 모두 중소기업(「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포함)으로 구성된 과제 	3%	연구개발계획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증빙서류
바	<p>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p>	1%	산학협약서
사	<p>「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p>	1%	지자체 및 산업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아	<p>「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p>	1%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4. 협동·공동연구기관(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기업(대표)에 대한 가점 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다수가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	가점 내용	가점	증빙서류 또는 확인방법
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제2호 참조